

슬픔이 북받치고 나서야 비로소 배움이 있었다

<55> 지나내학원(支那內學院)의 구양경무(歐陽竟無)거사

양문회(楊文會) 거사 입적 이후, 금릉각경처(金陵刻經處)의 사업을 계승한 이는 근대 유식학의 대가인 구양경무(歐陽竟無; 1871~1943) 거사이다. 거사는 본명이 구양정(歐陽正)이고, '경무'는 50세 이후 개명한 것이다. 강서(江西) 의황(宜黃) 사람으로 흔히 '의황대사(宜黃大師)'라고 칭했다. 당대 구양순(歐陽詢)과 송대 구양수(歐陽修) 등이 거사의 선조로 여겨져 문장으로 이름을 떨친 집안 출신이다. 증조부와 조부 등도 뛰어난 학문을 지녀 과거에 급제해 관직에 몸담았다. 그의 부친인 구양휘(歐陽暉)는 어려서 과거에 급제해 관직에 올랐지만, 전쟁에 나가 때면 패배해 중년에 관직의 뜻을 접고 농사에 전념했다. 하지만 문장으로 유명한 '의황' 지역에 명문가로 자리 잡았다.

본래 거사는 가문의 전통을 따라 '이학(理學)'의 '경세지학(經世之學)'에 전념하다가 청일전쟁(1894~1895) 이후 시모노세키 조약(馬關條約)을 목도하고 유학의 무력함을 체절하게 느껴 '양명학(陽明學)'으로 전향했다. 당시 20세의 거사는 남창(南昌)

述記> <인명대소(因明大疏)> 등 유식학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다. 그 후, 거사는 고향으로 돌아가 성지학당(誠志學堂)을 개설해 후학을 지도했다. 1906년에는 광창의 교유에 입관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친의 중병으로 사임했다. 모친 병사 후부터 거사는 육식과 색욕을 끊었다. 관직에도 미련을 두지 않았던 그는 불교에 거사로서 귀의할 것을 맹서하고, 구봉산(九峰山)에 은둔해 수묘(守墓)하며 돈각(頓覺)을 구했다. 그로부터 1년 후 구양 거사는 남경으로 가 '기원정사'에서 양문회 문하에서 본격적으로 불교를 공부했다.

1907년 거사는 양문회의 명으로 일본에 가서 불전을 수집했다. 이 시기에 거사는 장태염(章太炎) 유사배(劉師培) 등과 함께 불법에 대한 깊은 논의를 했다. 이듬해 거사는 귀국하여 생계를 위해 광주 우급사범학당(優級師範學堂)에서 강의를 맡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사직하고, 고향의 구봉산에서 친구인 이증강(李證剛)과 농장을 경영했다. 이 또한 병이 더욱 깊어져 어려웠다. 거사의 나이 40이었다. 거사는 다시는 생계를 위한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불법을

<친교사구양선생사략(親教師歐陽先生事略)>에 따르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도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거사의 업적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지나내학원(支那內學院)'의 설립과 그 운영이었다. 연구와 교육이 완전하게 결합됐을 때, 비로소 연구·교육의 양쪽 분야에 모두 더욱 커다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나내학원은 중국 근대불교학의 산실이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학자들을 배출했다. 그들을 통해 양성된 후학들이 오늘날 중국불교학을 이끌고 있다. 지나내학원이야말로 근대 중국불교학 부흥의 근원지라 해도 무방하다.

거사가 '지나내학원'을 설립한 직접적인 원인은 스승인 양문회 거사가 설립한 '기원정사(祇園精舍)'의 계승이었다. 본래 양문회 거사가 입적할 때, 각경처와 관련한 모든 재산은 금릉각경처에 귀속되도록 유언을 남겼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자식들과 손자들이 계속 각경처에 머물면서 재산권을 행사했다. 당시 금릉각경처는 5000평에 이르는 대지에 200여 칸에 달하는 방이 있을 정도로 방대했다는 기록을 보면 그 재산의 규모가 짐작된다. 실제적으로 양 거사의 후손들은 1936년에 이르러서야 재산권을 금릉각경처에 넘겼다. 이는 양 거사가 입적한 지 25년이 지난 후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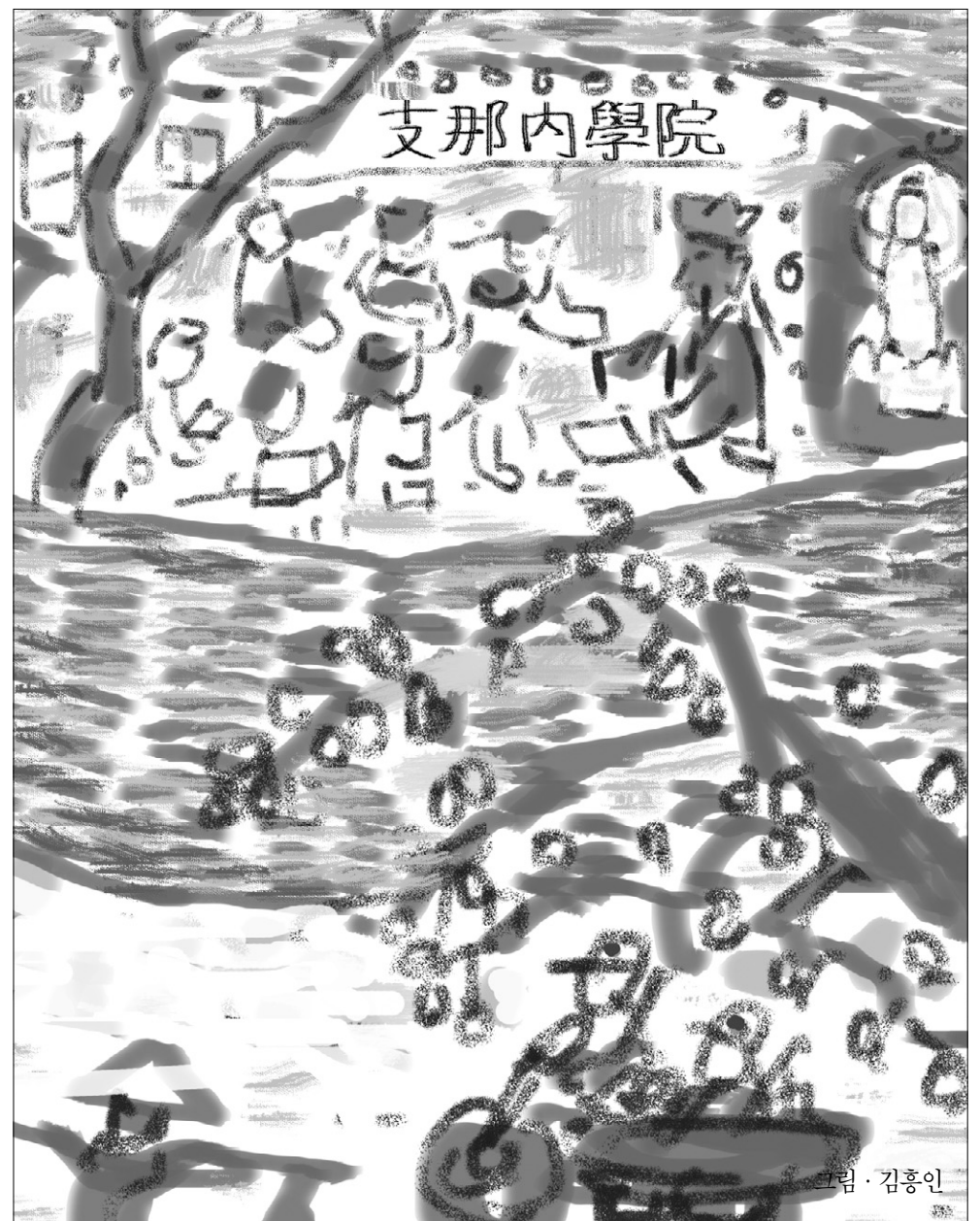


그림 · 김홍인

거사는 근대 중국불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지나내학원은 중국불교학 부흥의 근원지

중화권 불교 승려·학자 상당수 직·간접적 관계

의 유명한 경운서원(經訓書院)에서 수학했다. 그 곳에서 그는 불교학 대가인 계백화(桂伯華) 거사와 만났다. 거사는 계백화로부터 <대승기신론>과 <승업경> 등을 깊이 이해하게 됐고, 점차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 1904년 거사는 북경으로 가서 과거에 참가하지만, 불행히도 장원을 놓치고 차석으로 급제했다. 당시 청조(淸朝)의 규정에 의하면 장원은 국자감에서 수학하는 기회를 얻지만, 차석은 벼슬을 받았다. 거사는 광창현(廣昌縣)의 '교유(敎諭)'라는 관직이 임명됐다. '교유'는 정팔품(正八品)에 해당하는 '한직'으로 '의황'의 명문가 출신인 거사가 만족할 직책은 아니었다. 거사는 벼슬에 좌절을 느끼고 낭학하던 중에 남경의 '금릉각경처'를 방문했다. 당시 거사는 그곳에서 계백화 거사를 재회했고, 그를 통해 양문회 거사를 만났다. 구양경무 거사는 양문회로부터 깊은 감명을 받고, <기신론>과 <성유식론술기(成唯識論

취)를 배워 볼 것을 결심했다. 다시 금릉각경처로 돌아간 구양 거사는 경전의 교정을 전담했다. 1911년 양문회 거사가 입적하면서 각경처(刻經處)의 일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치암(陳樞庵)에게는 출판 분야를, 진의보(陳宜甫)에게는 대외사업을, 구양 거사에게는 경전의 정리와 교정에 관한 일을 나누어 유촉했다. 실제적으로는 거사가 각경처와 관련된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했다.

근대 중국불교에 있어서 구양 거사는 그의 스승인 양문회 거사에 비견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거사는 스승으로부터 불교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배움을 얻었으나, 스스로 더욱 정진해 특히 법상유식학(法相唯識學)을 다시금 부흥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유작집인 <구양경무내외학(歐陽竟無內外學)>에는 각 종의 교학(敎學)에 대한 연구논술이 보이는데, 그의 수제자인 여징(呂徵) 거사가 저술한

금릉각경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교를 세울 비용은 거사가 감당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당시 거사는 강연과 다양한 학술행사의 개최 등을 통해 꾸준히 모금활동을 했다. 거사의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1921년 말에는 어느 정도 기금이 형성돼 마침내 지나내학원의 이사회를 결성하게 됐다. 이사회에는 당시 북경의 유명한 정치가인 엽공작(葉恭綽), 옹희령(熊希齡)을 비롯해 유명한 학계의 거두 양계초(梁啟超), 채원배(蔡元培), 심증식(沈曾植), 장태염(章太炎), 진삼립(陳三立) 등이 이사로 참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계 학계의 노력으로 북경 정부의 재정부·교육부가 협상해 강소성 정부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받은 강소성 재정청은 지나내학원의 건립기금으로 '10만원'을 출자하게 됐고, 또한 매월 국세(國稅) 가운데 '1000원'을 운영기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로써 '지나내학원'의 건립기금으로 설정한 '30만원'이 넘게 모였다. 1922년 7월 7일, 남경 공원으로 교육부·내무부 인가를 얻은 중국 최초 국가공인된 불교대학(학계: 중학부 4년, 대학의 예과 2년, 본과 2년, 전문연구부인 지나내학원이 탄생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해 일본군이 남경으로 진공하자, 지나내학원은 겨울에 사천성(四川省) 강진(江津)으로 이주하고, 그 명칭을 '지나내학원강진족원(支那內學院江津蜀院)'으로 개명했다. 사천성에서는 '각경처' 업무까지 담당해 30부, 50여 권을 판각·출판했다. 1943년 2월 23일 구양 거사는 폐렴으로 73세 나이로 죽은(蜀院) 후원에서 입적했다. 거사는 부모, 두 아들과 지극히 사랑했던 딸, 세 누이와 형 등 주변 가족들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고, 남은 손

자 넷도 외국에 유학중이었기 때문에 거사의 임종은 여징(呂徵) 등 제자만이 지켰다. 구양 거사 입적 후, 4월 27일 교육부에서는 거사에게 '교육부정청행정원전정국부포홀구양대사(教育部呈請行政院轉呈國府褒恤歐陽大師)'라고 포상했다. 그 해 6월, 지나내학원에 원우회(院友會)가 결성됐고, 여징을 원장으로 추대했다. 1949년 지나내학원을 다시 '중국내학원'으로 개명했지만, 원장은 여징 거사가 계속 맡았다. 1953년, 중국내학원의 원우회는 당시 여러 가지 정치상의 원인으로 '폐원(閉院)'을 결의했다. 1922년에 창립해 1953년에 이르는 30여 년간 근대 중국불교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했던 지나내학원은 비록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영향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현대 중국과 대만, 싱가포르 등의 중화권 불교에서 활약하고 있는 승려와 학자들 가운데 상당

수가 지나내학원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구양 거사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행한 삶을 살았다. 6세에 부친을 여읜 것을 비롯해 주변의 모든 가족들이 거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거사가 자주 '슬픔이 북받치고 나서야 비로소 배움이 있었다(悲憤而後有學)'고 자술한 것과 같이 그는 슬픔을 겪을 때마다 다짐해 불법을 연구해 뛰어난 저술을 남겼다. 거사가 이룩한 유식학의 부흥은 근대 중국사상에 심한 영향력을 미쳤다. 만년에 거사는 유식학으로부터 반야학을 통섭하고자 노력했고, 또한 유가와 불교를 회통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거사의 유작집인 <구양경무내외학(30책)>에는 모두 26종의 귀중한 저작이 실려 현재에도 금릉각경처에서 출판돼 유통 중이다.

■ 김진무 (중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석가세존진신 치아사리 봉안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

2010년 경인년 봄 금강산 산신대제

소통과 화합의 봄은 금강산에서...
국내최초의 금강산 산신대제를 통해 금강산 산신님의 위신력에 흠뻑 취해봅시다.
<사업변창, 가내길상, 건강증진, 우환극복, 부자되는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금강산 산신대제의 봉행은 범음·범법과 전통의식을 통한 여법 한 행사로 진행됩니다.

- 일 시 : 2010년 4월 24일 오전 10시
- 장 소 :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
- 동참금 : 3만원
- 문 의 : 1) 서울, 경기지역 ⇒ 건봉사 서울포교원 벽운사
www.bwjisan.com 02-979-0108, 971-1544
2) 통합전지역 ⇒ 건봉사 중무소(033-682-8100~3)

Ⓧ 대한불교조계종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

공고 제2010-1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기간 연장공고

2009. 9. 18에 게재된 분위위원회 공고 제2009-4호의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기간 연장공고」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추가연장 공고합니다. 2010. 3. 18.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회위원회 위원장

1. 신청기간: 2010. 3. 18. ~ 2011. 12. 31.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피해자)
 - ※ 10·27법난의 정의: 「10·27법난」이라 함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
- 나. 10·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
3. 신청인의 자격: 가. 의료지원금 지급신청: 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일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
나. 명예회복 신청: 피해자, 유족(사망시), 조계종 및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
4. 신청서 접수처: 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회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1) 직접(방문)제출: 일과 시간내(09:00 ~ 18:00)
 - 2) 우편제출: 신청기간내 도달
- 나. 주소: 위)140-210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지 전쟁기념사업회내 439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회위원회
5. 신청서 제출서류: 가. 피해신고및명예회복신청서 또는 피해신고및의료지원금신청서 각 1부 (명예회복신청서와 의료지원금신청서 서식이 구별됨을 유의)
나. 피해경위서 1부(신분증 사본 포함)
다. 진단서 등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각 1부
- ※ 대리인에 의한 신청 경우: 아래와 같은 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명예회복(의료지원금)신청(수령)위원회 1부, 가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①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② 입원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③ 수용자인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④ 그밖의 경우에는 주소지 읍, 면, 동장
6. 의료지원금 신청기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치료비, 개호비 및 보조장구 구입비 등 신청
7. 심의 결정절차: 관계법령에 따라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의료지원금 판정실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회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회(T. 02-748-5555)에 문의 바랍니다.
- ※ 신청서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10·27법난피해자 신청접수안내」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알릴관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심의회위원회 신청공고 바로가기」 등에서 내려받기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0. 4. 19 이후는 위원회 홈페이지 이용 / www.beopnan.go.kr / 주우사이드에서 검색어: 「1027 법난」)

10·27법난관련 자료를 찾습니다

- 접수처: 위)140-120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지 전쟁기념사업회내 439호 02)748-5555
- 자료범위: 10·27관련 신문기사, 영상물, 사진, 일기문, 기고문, 서신, 증언록 등
- 방 법: 전화, 방문수집, 우편제출
- 기 간: 2010. 3. 18 ~ 2011. 12. 31(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활 용: 기념관·전시관내 전시, 자료발간 등
- 기 타: 기증서 전달 및 제공자 명명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지원단장